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340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3405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가소42938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9. 29.

판결선고 2022. 10. 27.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가소42938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15. 7. 23.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은 피고가 소개한
평택 소재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신청금 명목이었고, 토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수수된 돈이었다. 현장에 임하여 확인을 해보니 소개받은 토지는 맹지였고, 피고는 위 신청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청금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개 받은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피고가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5. 7. 23. 당시 C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의 권유로 평택시 D 소재 일부 토지를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그
신청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점, ② 원고는 C의 통장에
4,000,000원을 추가 입금하고 소개받은 토지를 현장 확인한 연후에 생각을 바꿔 토지 매수를
포기하면서 그 무렵 곧바로 기획부동산 운영자인 C만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그로부터 위

매수 과정에서 지급한 합계금 5,000,000원 모두를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C으로부터 4,000,000원만 돌려받고 그에게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③ 그때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연후에야 원고는 이 사건 신청금 1,000,000원과 관련하여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신청금은 회사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수수한 것이어서 이를 출금하여 사장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신청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그 무렵 현금이 인출된 내역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기획부동산 사장이었던 C도 위 돈을 차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던바, 그에 따라 원고의 고소에 따른 피고의 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신청금은 토지를 매수하려던 원고와 그 매매를 주관한 기획부동산 회사나 그 운영자인 C 사이에 수수된 돈으로서의 성격이 짙고, 피고의 계좌는 기획부동산 측에서 원고로부터 신청금을 수수하는 통로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신청금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고 하더라도, 기획부동산 회사나 그 운영자인 C이 위 돈의 반환의무자가 될 수 있음은 별론, 그 직원에 불과한 피고가 기획부동산 측에 지급된 위 신청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조윤신, 판사 조미옥

1)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돈의 액수는 5,000,000원이라고 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와 항소장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